문 화 복 지 위 원 회

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안 산 시

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-36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언어 장벽으로 인해 생활고충, 취업, 근로관계, 체류지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모국어 통역상담을 지원해온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위탁기간 2026.12.31.에 만료될 예정임

○ 이에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자 함.

□ 위탁사무명

○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

□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0조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7조, 제17조
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[붙임 1]

○ 필 요 성

- 안산시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, 외국인 상담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.

▢ 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

○ 민간위탁 기간 : 2027. 1. 1. ~ 2031. 12. 31. (5년)

○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외국인주민 전화상담, 방문상담 및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
- 생활정보제공, 임금체불·퇴직금, 연금·보험, 사업장 변경, 재고용, 산업재해, 출입국, 의료, 민사·형사사건, 성희롱·성폭력, 가정불화, 가정폭력 등 외국인주민 고충과 관련된 상담지원 및 연계업무
- 그 밖의 통역 상담지원 관련업무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▢ 위탁시설 개요

○ 소 재 지 :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(원곡동, 외국인주민지원본부 1층)

○ 규　　모 :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내 1층(면적 122㎡)

○ 운영인력 : 13명(센터장 1명, 사무직 2명, 상담원 10명)

▢ 수탁자 선정방식

○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

▢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: 【붙임 2】

▢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3】

▢ 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

【붙임 1】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1조

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「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0조

제20조(설치 및 운영)

② 시장은 상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, 한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다.<개정 2018.5.18.>

□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, 제17조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7조(재위탁)

①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절차 이행 후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【붙임 2】

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

▢ 위탁사무명 :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

검토항목	검토내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이 겪는 의사소통 및 취업 등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국어 상담으로 생활정보 제공 및 지원하기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,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경험이 축적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「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, 매년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사 점검을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
3. 경제적 효율성	시가 직접 운영 시 상담지원 운영 전문 인력 채용 등 인력 확대가 필요하며, 민간위탁운영이 직영보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함.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민간 위탁 운영 시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.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국가별 상담통계, 유형별 상담통계(정보제공, 고용상담, 의료지원, 체류지원, 생활고충 등), 상담 서비스별(전화, 내방, 출장상담) 통계 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성과 측정이 용이함.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전승인 검토 및 정기 지도·점검 실시로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	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은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 적응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
검토 종합의견	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들에게 다양한 통역 상담지원을 수행하며,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,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함

【붙임 3】

(제2-1쪽)

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「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2조(운영경비 등 지원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전년도 위탁운영비 소요액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2031년	비 고
총 소요액		536,067	562,870	591,014	620,565	651,593	재위탁 기간 : 5년
안산시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	운영비	38,597	40,527	42,553	44,681	46,915	
	인건비	497,470	522,344	548,461	575,884	604,678	

다. 재원조달방안: 도비매칭, 시비 보조금 지원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사항 없음

4. 작성자: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 (2027년)	2차연도 (2028년)	3차연도 (2029년)	4차연도 (2030년)	5차연도 (2031년)	총 계
세 입		**536,067**	**562,870**	**591,014**	**620,565**	**651,593**	**2,962,109**
도비 보조금		35,500	35,500	35,500	35,500	35,500	177,500
지방세 수입		500,567	527,370	555,514	585,065	616,093	2,784,609
세 출		**536,067**	**562,870**	**591,014**	**620,565**	**651,593**	**2,962,109**
민간 위탁금	운영비	38,597	40,527	42,553	44,681	46,915	213,273
	인건비	497,470	522,344	548,461	575,884	604,678	2,748,837
재원 조달		**536,067**	**562,870**	**591,014**	**620,565**	**651,593**	**2,962,109**
의존 재원	소 계	**35,500**	**35,500**	**35,500**	**35,500**	**35,500**	**177,500**
	보조금	35,500	35,500	35,500	35,500	35,500	177,500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**500,567**	**527,370**	**555,514**	**585,065**	**616,093**	**2,784,609**
	지방세수입	500,567	527,370	555,514	585,065	616,093	2,784,609
	세외수입						

※ 위 추계표는 위탁금의 5%씩 인상된 금액을 표시한 것임(인건비 등 인상분 반영)